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인도중재원 중재규칙 비교 연구

박 양 섭\*

- 
- I. 서 론
  - II. 인도중재원(ICA) 현황
  - III.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ICA 중재규칙 비교
  - IV. 결 론
- 

### I. 서 론

한국과 인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액은 2006년 말 90억불을 상회하여 인도가 한국의 10위권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고, 한국의 대인도 투자도 10억불 규모에 달해 한국은 인도에서 9번째 큰 투자국이 되었다. 또한 인도는 최근 수년간 8%가 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2006년 3월부터 협상이 진행 중인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이 타

---

\* 엘지 생명과학 인도법인 법인장, 경영학 박사

결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 혹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 간 상거래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양국 기업간 분쟁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국 간의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라 함) 하나가 중재인데, 특히 중재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 합의와 중재지의 결정, 중재인의 선정 등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가 인정되며, 이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1958년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국제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중재 및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정한 국제중재규칙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 회사와 국제 상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 혹은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인도 기업과의 상거래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기관으로 선호되고 있는 ICC,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및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등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회사와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니 만큼 인도중재원(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이하 “ICA”라 함)의 이용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측면에서 인도 중재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라 함)이 07년 2월에 제정·시행한 국제중

1) 2007년 3월30일 현재 총 142개국 이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2) 국내 선행연구로는 김갑유, “국내기업관련 ICC 중재의 현실적 도전과제와 미래 - ICC 절차에서 실무상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국제중재 실무회 창립총회 및 제1차 발표회, 2005.;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5.; “국제중재규칙”, 2007.; 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무역학회지 제31권 1호, 2006. 등임.

재규칙을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현재 ICA 및 ICA 중재규칙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에 관한 소개 및 향후 인도 기업과 국제 분쟁 발생시 혹은 인도 기업과 인도 내에서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의 하나로 ICA 중재규칙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인도중재원(ICA) 현황

2007년 3월 현재, ICA는 회원 약 5,000 명이 있으며, 태국, 한국, 미국, 중국, 홍콩 등 42개국과 상호 중재협력 협정 체결, 외국인을 포함한 약 2,000 명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500 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였고, 인도 전역에 8개의 지점(Mumbai, Chennai, Kolkata 등)을 구비 하고 있다.<sup>3)</sup> ICA는 중재를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개념에서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으로의 전환을 통해 아직도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중재제도에 친숙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이를 이용하는 빈도도 저조한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및 국제중재 실무회와 공동으로 2006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중재대회가 2007년에는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ICA는 ICA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외국에 인도 중재제도를 널리 알려 앞으로 국제 상거래 계약에서 인도를 중재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계 전역에 ICA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ICA에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 회계 연도 간 신규로 44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42건이 상사중재 건이며, 2건은 해상중재 건이다. 그리고 총 44건중 7개건이 싱가포르,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이 관련된 국제중재 건이다. 동 회계 연도 중 75건이 해결되었는데 72개 중재건은 상사

3) ICA, "ICA quarterly Vol.XLI/No.4", 2007.

중재 건이며, 3개 중재 건은 해사 중재 건으로 파악되었다.<sup>4)</sup>

한편, KCAB에는 2006년 47건의 국제중재 건을 포함한 215건의 중재사건이 접수 되었는데<sup>5)</sup>, ICA와 KCAB의 중재 접수 건을 상대 비교해 보면, 향후 인도의 경제고도성장 및 영어 사용 국가임을 감안해 볼 때 ICA의 활용에 대한 미래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하겠다.

### III.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ICA 중재규칙비교

ICA는 국제중재 관행에 좀 더 부합하는 중재규칙을 만들기 위해 2005년 1월에 ICA 중재규칙을 개정하였고, KCAB도 그 동안의 KCAB의 중재규칙이 국내중재를 기본으로 제정되어 국제중재를 유치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이용 당사자에게 편의성과 친숙성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국제중재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ICA 중재규칙을 한국기업들에 친숙한 KCAB 국제중재규칙과 비교해 봄으로써 ICA 중재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인도기업과 국제 상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 및 현지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 발생시 굳이 ICC 혹은 KCAB 등 다른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것보다 표준 계약서에 ICA를 중재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려는 한국 회사들이 중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sup>6)</sup>

#### 1. 중재 조항과 범위

중재 조항에는 중재장소, 중재기관, 중재절차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CA 중재규칙에 명시된 중재 조항에는 중재 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명

4) ICA, “41차 ICA Annual Report”, 2005-2006. 2006, p.11.

5) KCAB, “중재” 제323호, 2007, p.24.

6) 논리 구성상 중재제기,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비용, 중재판정 등으로 비교분석하여야 하나, 이러한 유형 간의 경계선을 긋기에 어려운 사안들이 있고, 또한 관련 쟁점이 적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단순 비교에 그치고 있음을 밝혀둔다.

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시 중재 장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sup>7)</sup>. 한편, KCAB의 중재 조항은 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 2가지가 있어 국제 중재규칙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적용 범위에 대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sup>8)</sup>.

## 2. 통지 및 서면제출

ICA 중재규칙에서는 모든 교신을 사무국(Registrar)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sup>9)</sup> 사무국의 불필요한 업무가 많고 매우 긴급하게 중재인과 교신해야 할 경우에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반면, KCAB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항상 사무국을 경유하여 교신해야 하였으나, 새로이 제정된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중재인과 직접 교신하고, 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sup>10)</sup>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박한 사정 때문에 중재인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때 사무국을 경유하지 않고 이메일 등을 통한 교신이 직접 가능하면 중재인의 절차적 결정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중재규칙 상에서는 사무국을 경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중

7) 만약, 인도 중재규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거래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Any dispute of difference whatsoever arising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meaning, scope, operation or effect of this contract or the validity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and the award made in pursuance thereof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8) 만약, KCAB의 국제중재규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거래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9) ICA 중재규칙, Rule 14 & Rule 40.

10) KCAB 국제중재규칙, 제4조.

재기일 하루 전에 급박하게 중재판정부의 절차적 결정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인과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임과 동시에 매우 긴급하게 중재인과 교신해야 할 경우에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3. 중재인의 수와 선정

#### 1) 중재인의 수

ICA 중재규칙에서는 사건 금액이 일 Crore 루피(약 한화 2억원)를 넘지 않고 계약서에 3명의 중재인을 선임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사건 금액이 일 Crore 루피를 넘으면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3인 중재인 선정 경우,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비용 관련 보증 금액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이 3인 중재인 대신에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sup>11)</sup>

반면, KCAB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수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3인 중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무국이 사건의 성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3인 중재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금액이 작은 사건인 경우에도 무조건 3인 중재로 가는 것을 막는 한편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3인 중재를 원하면 사무국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3인 중재로 갈 수 있다.<sup>12)</sup>

#### 2)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

중재인의 선정은 중재규칙 중 양 당사자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중재인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그 중재규칙을 따라서 중재를 수행하기에 양 당사자가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

11) ICA 중재규칙, Rule 22.

12) KCAB 국제중재규칙, 제11조.

이에 ICA 중재규칙에서는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하에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다만, 양 당사자중 일방 당사자가 인도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분쟁이 3인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인 2인을 선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2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2인 중재인을 선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 중에서 한명을 골라 선정하며, 양 당사자중 일방 당사자가 인도에 속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sup>13)</sup>

그리고,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혹은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sup>14)</sup>

반면, KCAB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에는 ICA 중재규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재인을 선정하고, 분쟁이 3인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중재인 2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ICA 중재규칙과 동일하며, 다만, 의장 중재인 선정 방법이 ICA 중재규칙과 다르다. 의장 중재인은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가 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2인 중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sup>15)</sup> 그리고 중재인 기피의 경우에는 ICA 중재규칙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다만 15일 이내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에서 중재 기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명정대하고, 믿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절대

13) ICA 규칙, Rule 23.

14) ICA 중재규칙, Rule 26.

15) KCAB 국제규칙, 제 12조.

틀림없고 정직한 중재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sup>16)</sup> 따라서,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 관련 규칙은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중 하나인데, ICA 중재규칙에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 관련 규칙을 국제중재의 관행과 일치시키고 있어 중재인 선택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4. 중재 장소와 언어

##### 1) 중재 장소

ICA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장소를 인도로 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외국 국적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이외의 제3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sup>17)</sup>, 국제 중재의 경우에 중립적인 장소를 중재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중재장소를 서울로 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sup>18)</sup>, ICA 중재규칙에서처럼 양 당사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중재인이 중재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중재장소는 실제 중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중재장소에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와 중재지의 법이 절차법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sup>19)</sup>,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분쟁 발생시 ICA 중재 규칙 하에서 인도를 중재 장소로 정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

16) D.K Jain, "Arbitration - as a concept and as a process", ICA Journal Vol. XLI/No.4, 2007, p.2.

17) ICA 중재규칙, Rule 42.

18) KCAB 국제중재규칙, 제18조.

19) 임영철, "국제중재규칙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전망", 중재 제323호, 2007, pp.15-16.



## 2) 중재 언어

ICA 중재규칙에서는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영어가 중재어로 되어 있고, 다른 언어를 중재어로 선택할 경우 번역·통역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sup>20)</sup>

반면, KCAB 기존규칙에서는 합의가 없으면 한국어가 중재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KCAB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일반적으로 국제 중재에서는 영어가 중재언어가 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ICA는 영어가 기본 중재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5. 중재비용

중재비용은 신청비용, 관리비용, 중재인 보수 그리고 기타 잡비로 구분될 수 있다. ICA 중재규칙에서는 사무국이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의 금액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분하여 한번 혹은 여러 번에 걸쳐 납입한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중재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방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입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사무국 혹은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예납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떠한 대금도 양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직접 지불은 금지하고 있다. 예납금이 과도하게 납부된 경우 이를 납입한 당사자에게 그 잔액이 반환된다.<sup>22)</sup>

반면,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도 비용의 예납 관련 ICA 중재규칙과 대

20) ICA 중재규칙, Rule 56.

21) KCAB 국제중재규칙, 제24조.

체로 비슷하나, 예납금 납입을 현금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며,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예납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액을 납입한 당사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sup>23)</sup>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논란 여지를 제거하였다.

ICA 중재규칙과 KCAB 국제중재규칙의 관련諸多 비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등록비용

ICA 규칙에서는 등록비용(신청요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one crore 루피(약 한화 2억원)까지는 2,500루피(약 한화 5만원), one crore 루피 이상은 5,000 루피(약 한화 10만원)를 등록비용으로 하고 있다.<sup>24)</sup>

반면,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요금으로 100만원을 납입해야 하고, 신청인이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은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런 전항의 규정들은 반대 신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sup>25)</sup>

#### 2) 중재인 보수(수당) 및 관리 비용

ICA 중재규칙에서 중재인 보수 및 관리 비용은 사건 금액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23) KCAB 국제중재규칙, 제39조.

24) ICA 중재규칙, Rule 31(1).

25) KCAB 국제중재규칙, 별표 I 제1조.

<표 1> ICA 중재규칙의 중재인 보수 및 관리 비용<sup>26)</sup>

| 사건 금액  | 중재인 보수   | 관리 비용   |
|--|--|---|
| 500,000 루피(한화 약 일천만원)까지                            | 30,000 루피(한화 약 6십만원)   | 15,000 루피(한화 약 3십만원)  |
| 500,001 - 2,500,000 루피 (한화 약 일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 기본 30,000 루피에 1,500 루피 /매 100,000 루피마다<br>(단, 최대 60,000 루피 까지)<br>(기본 한화 약 6십만원에 매 사건금액 2백만원마다 3만원 추가, 단 최대 일백이십만원까지)      | 중재인 보수의 반액  |
| 2,500,001 - 10,000,000 루피 (한화 약 5천만원부터 2억원까지)      | 기본 6만 루피에 1,200 루피 /매 100,000루피마다<br>(단, 최대 150,000루피까지)<br>(기본 한화 약 일백 이십만원에 매 사건금액 2백만원마다 2만4천원 추가, 단 최대 3백만원까지)         | 중재인 보수의 반액  |
| 10,000,001 - 50,000,000 루피 (한화 약 2억원부터 10억원까지)     | 기본 일십오만 루피에 22,500 루피 / 매 10,000,000 루피마다<br>(단, 최대 240,000루피 까지)<br>(기본 한화 약 3백만원에 매 사건금액 2억원마다 45만원 추가, 단, 최대 4백8십만원 까지) | 중재인 보수의 반액  |
| 50,000,001- 100,000,000 루피 까지 (한화 약 10억원부터 20억원까지) | 기본 2십4만 루피에 15,000루피/매 10,000,000루피 마다<br>(단, 최대 315,000루피 까지)<br>(기본 한화 약 4백8십만원에 매 사건금액 2억원마다 30만원 추가, 단, 최대 6백3십만원까지)   | 기본 1십2만 루피에 8,000루피/매 10,000,000루피 마다<br>(단, 최대 160,000루피 까지)<br>(기본 한화 약 2백4십만원에 매 사건금액 2억원마다 16만원 추가, 단, 최대 3백2십만원까지) |
| 100,000,000 루피 이상                                  | 기본 315,000 루피에 12,000루피/매 10,000,000 루피마다<br>(기본 한화 약 6백3십만원에 매 사건금액 2억원마다 24만원 추가)  | 기본 160,000 루피에 6,000루피/매 10,000,000 루피마다<br>(기본 한화 약 3백2십만원에 매 사건금액 2억원마다 12만원 추가)                                      |

26) ICA 중재규칙, Rule 31(2).

반면,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인 수당의 기본 금액은 시간에 시간당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시간당 요율은 시간당 미화 250불에서 미화 500불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 결정한다. 사무국이 시간당 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분쟁의 성격과 분쟁금액 그리고 중재인의 지위와 경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시간은 심리에 소요된 시간과 절차와 관련 문제의 준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중재인의 수당은 아래 (표 2)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된다.<sup>27)</sup>

<표 2> KCAB 국제중재규칙의 중재인 수당

| 신청금액(원)                                | 최소 중재인수당(원)                                  | 최대 중재인수당(원)                                  |
|--|--|--|
| 50,000,000 이하                          | 1,000,000                                    | 2,000,000                                    |
| 50,000,000 초과<br>100,000,000 이하        | 1,000,000 +<br>(신청금액-50,000,000)×2%          | 2,000,000 +<br>(신청금액-50,000,000)×5%          |
| 100,000,000 초과<br>500,000,000 이하       | 2,000,000 +<br>(신청금액-100,000,000)×1%         | 4,500,000 +<br>(신청금액-100,000,000)×3%         |
| 500,000,000 초과<br>1,000,000,000 이하     | 6,000,000 +<br>(신청금액-500,000,000)× 0.75%     | 16,500,000 +<br>(신청금액-500,000,000)×2.8%      |
| 1,000,000,000 초과<br>5,000,000,000 이하   | 9,750,000+<br>(신청금액-1,000,000,000)× 0.25%    | 30,500,000 +<br>(신청금액-1,000,000,000)×1%      |
| 5,000,000,000 초과<br>10,000,000,000 이하  | 19,750,000 +<br>(신청금액-5,000,000,000)× 0.1%   | 70,500,000 +<br>(신청금액-5,000,000,000)×0.2%    |
| 10,000,000,000 초과<br>50,000,000,000 이하 | 24,750,000 +<br>(신청금액-10,000,000,000)× 0.05% | 80,500,000 +<br>(신청금액-10,000,000,000)×0.1%   |
| 50,000,000,000 초과                      | 44,750,000 +<br>(신청금액-50,000,000,000)×0.02%  | 120,500,000 +<br>(신청금액-50,000,000,000)×0.07% |

\* 단, 중재인 수당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관리요금에 관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신청금액에 따라 관리 요금을 예납해야 하며, 신청금액 산정은 신청금액과 반대 신청 금액을 합산하며, 이자에 대한 신청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신청금액이 원

27) KCAB 국제규칙, 별표 II 제1조.

금 신청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자 신청금액만을 분쟁금액 산정에 고려한다. 신청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정부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sup>28)</sup>

| 단계  | 신청금액(원)                               | 관리요금(원)                                     |
|-----|---------------------------------------|---|
| I   | 10,000,000 이하                         | 2%(최저 5만원)                                  |
| II  | 10,000,000 초과<br>50,000,000 이하        | 200,000 + (신청금액 - 10,000,000) × 1.5%        |
| III | 50,000,000 초과<br>100,000,000 이하       | 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 × 1.0%        |
| IV  | 100,000,000 초과<br>5,000,000,000 이하    | 1,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 0.5%     |
| V   | 5,000,000,000 초과<br>10,000,000,000 이하 | 25,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00) × 0.25% |
| VI  | 10,000,000,000 초과                     | 38,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00) × 0.2% |
| VII | 금액 없는 경우                              | 3,000,000                                   |

### 3) 기타 비용

ICA 중재규칙에서는 매번 중재 심리(hearing)마다 시설이용료 2,500 루피(약 한화 5만원), 시내교통비는 750 루피가 각각 부과된다. 시외교통비(기차, 비행기 등)는 실비로 부과되며, 시외에서 지불되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의 경우에는 대도시(뉴델리 등) 하루 당 6,000 루피(한화 약 1십2만원), A급 도시 하루 당 3,000 루피(한화 약 6만원), 기타 도시 하루당 2,000 루피(한화 약 4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부과된다.

반면,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여행, 식사, 숙박, 그리고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절차에 필요한 한도에서 발생한 실제 경비를 의미한다.<sup>29)</sup>

대한상사원의 국제규칙에서는 유명 중재인을 유치하고, 규모가 큰 계약의 중재 건도 유치하기 위해, 중재인 수당을 현실화·국제화하였고, ICA

28) KCAB 국제중재규칙, 별표 I 제2조.

29) KCAB 국제중재규칙, 별표 II 제2조.

중재규칙의 중재인 수당도 현재 주로 ICA 중재 건수가 인도내의 중재사건 임을 감안할 때 만약 중재인 수당을 현실화·국제화한다는 명분하에 대폭 인상할 경우, 오히려 중재를 이용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인도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중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회사와 분쟁 발생시 KCAB를 이용하는 것보다 ICA를 중재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6. 판정관련 의사결정과 중국판정의 기한

### 1) 판정관련 의사결정

ICA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르며, 만약 그러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sup>30)</sup>, 이 점은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이는, ICA 중재규칙 및 KCAB 국제중재규칙 모두 의사결정 방법에 관해서는 ICC 중재규칙을 따름으로써 의장중재인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절차의 신속성과 합의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2) 중국판정의 기한

ICA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는 위임조건(terms of reference)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그리고 중재 시작일로부터 최장 2년 안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 혹은 중재위원회(사무국)에 의해 2년의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sup>32)</sup>

---

30) ICA 중재규칙, Rule 61.

31) KCAB 국제중재규칙, 제30조.

32) ICA 중재규칙, Rule 63.

반면,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이유있는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국 판정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sup>33)</sup>

ICA 중재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6개월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아 중재인들이 이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 처럼 심리종결일로부터 시한을 기산하여, 심리 종결 후 중재인들이 바로 합의 및 판정문 작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중재판정이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7. 비밀유지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재가 원칙적으로 심리가 비공개하에 이루어지고 제출한 서면과 판정문 또한 비공개인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소송은 공개의 가능성이 높기에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중재가 비밀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ICA 중재규칙에서는 심리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34)</sup>

한편, KCAB 국제중재규칙에서는 비밀유지에 대해 절차 및 그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리고 그 대리인과 보조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법률상 또는 소송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35)</sup>

33) KCAB 국제중재규칙, 제33조.

34) ICA Code of Conduct, 2.2.3.

35) KCAB 국제중재규칙, 제45조.

## 8. 신속 중재와 중재진행을 위한 지침

### 1) 신속중재

ICA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신속중재(fast track arbitration)로 갈 수 있다. 신속중재의 경우에는 구두 심리 없이 서면으로만 사건을 심리하며, 정해진 시간(통상적으로 3-6개월)안에 중재인들은 사건을 판정해야 한다.<sup>36)</sup>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빠른 중재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속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선택권은 ICA 중재규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 중의 하나로 KCAB 국제중재규칙에는 없는 내용이다.

### 2) 신속한 중재진행을 위한 지침

ICA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들과 양당사자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절차 진행상 준수해야 할 내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중재진행을 위한 지침(guidelines)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sup>37)</sup> KCAB 국제중재규칙에는 이러한 지침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 3) 행동 규범

ICA 중재규칙에서는 중재가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믿음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중재위원회, 중재인 및 양 당사자가 지켜야 될 기본 규범(code of conduct)을 명시하고 있으나,<sup>38)</sup> KCAB 국제중재규칙에는 이러한 규범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

36) ICA 중재규칙, Rule 44.

37) ICA 중재규칙, Guidelines for arbitrators and the parties for expeditious conduct of arbitration proceedings, 부록 1.

38) ICA 중재규칙, ICA Code of Conduct.



## IV. 결 론

오늘날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중재기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선택된 중재기관에 따라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집행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기업과 상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 혹은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들과 분쟁 발생시 ICA를 중재기관으로 선택하여 그 중재규칙을 사용할 경우, 그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재규칙 중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는 첫째, 중재기관 및 중재규칙의 선택에 관한 규정이다. 중재기관의 선택은 중재판정의 공신력과 집행력 보장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며, 각 중재규칙의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간 유리하다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나아가 법적예측가능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ICA 중재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의 ICA 중재규칙 이용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중재 장소에 대한 규정이다. 중재 장소는 실제 중재가 행해지는 장소임과 동시에 중재 장소에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 이루어지며, 중재지의 법이 절차법으로 중재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ICA 중재규칙에서는 중재 장소를 기본적으로 '인도'로 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중 어느 한 당사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이외의 제3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중재의 경우에 양 당사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중재지로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재 장소를 인도로 정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제3국에서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중재비용관련 규정이다. 한국 기업이 인도회사와의 국제 상거래 분쟁시 중재기관을 ICA로 정하면 중재판정부에 대한 수수료와 중재기관에 대한 수수료 등 많은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중재인 보수의 경우 ICC와 한국의 KCAB의 경우 시간당 계산을 하여 중재인에게 높은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중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실무

적으로 영향을 주는 큰 요소 중 하나가 변호사 비용인데, 인도내 변호사 비용은 유럽이나 미국 혹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므로 ICA를 중재기관으로 이용할 경우 중재비용 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다<sup>39)</sup>.

넷째, 중재인의 선정 방법이다. ICA 중재규칙도 국제중재의 관행에 준해 중재인을 선정하고 있어, 한국기업이 자기 의사를 반영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중재인 선정관련 객관성, 중립성 및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이다. ICA 중재규칙도 심리의 비밀유지, 중재인의 비밀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CA 중재규칙이 KCAB의 국제중재규칙과 기본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인도 중재판정부가 인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도 회사와 국제 상거래가 많은 한국기업 혹은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A를 중재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9) 다만, ICA도 향후 국제 중재 건 수가 증가하면, 중재인과 중재기관의 전문화, 국제도 및 신뢰도 향상 측면에서 중재인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거래 규모가 큰 국제 분쟁에서 능력 있는 국제 중재인을 선정하기 쉽지 않게 된다.

## 參 考 文 獻

- 김갑유, “국내기업관련 ICC 중재의 현실적 도전과제와 미래 - ICC 절차에  
서 실무상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국제중재 실무회 창립총회 및  
제1차 발표회, 2005.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07.
- \_\_\_\_\_,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5.
- \_\_\_\_\_, 중재 제323호, 2007.
- 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무역학회지  
제31권 1호, 2006.
- Alan Redfern, Martin Hunter, Nigel Blackaby, Constantine  
Partasides,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urth Edition”, London : Sweet & Maxwell, 2004.
- ICA, “Rules of Arbitration & Conciliation - as amended on Jan  
1, 2005”, 2005
- \_\_\_\_\_, “41st Annual Report 2005-2006”, 2006
- \_\_\_\_\_,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Universal, 2004
- \_\_\_\_\_, “ICA Journal Vol. XLI/No.4”, 2007
-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http://www.kcab.or.kr)
- ICA, [www.ficci.com/icanet](http://www.ficci.com/icanet)
- ICC, [www.iccwbo.org](http://www.iccwbo.org)

## ABSTRACT

A Study on the ICA Rules of Arbitration to be compared with KCAB  
International Rules of Arbitration

Park, Yang Sup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Korean companies which are doing a lot of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Indian companies can consider appointing ICA as a trustworthy institution and using ICA arbitration rules as a governing arbitration rule, when a dispute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Indian companies occurs.

Up to now, in the case of dispute with Indian companies, Korean companies are hesitant to utilize ICA as well as ICA arbitration rules as a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wing to lack of understanding on its rules. But, it is obvious that Korean companies which come to have better knowledge on ICA and its rules may consider more positively using ICA as well as ICA arbitration rules as a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using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s like ICC and KCAB etc. in the case of disputes with Indian companies because ICA arbitration rules are very objective and similar to other arbitration rules like ICC rules as well as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are frequently being used by Korean companies and also have other several advantages like cheaper cost of arbitration and fast track arbitration procedures. In conclusion, ICA and its rules can also be recommended as a public-trustworthy arbitration option if Korean companies want to resolve some dispute cases with Indian companies.

Key Words : arbitration, ICA , India